

■ 규정명 : 이사회규정
■ 주관부서 : 기획실
■ 최종개정일 : 2017.06.15

■ 규정번호 : HC-조직-2
■ 제정일 : 1998.05.01
■ 개정번호 : 8

■ 목차

1. 총 칙
2. 구 성
3. 회 의
- 부 칙

1. 총칙

1.1 목적

이 규정은 회사의 이사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1.2 적용

법령 또는 정관에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1.3 권한

1.3.1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,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, 회사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한다.

1.3.2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독한다.

2. 구성

2.1 구 성

이사회는 이사(사외이사 포함) 전원으로 구성한다.

2.2 의 장

2.2.1 이사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.

2.2.2 대표이사가 사고로 인하여 의장의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
정관 제37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이사가 의장이 된다

3.회 의

3.1 소 집

3.1.1 정기이사회는 매월 둘째주 수요일에 개최하며, 회사는 필요시 그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.

3.1.2 임시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.

3.1.3 이사회는 대표이사가 이사회 개최 3일전에 각 이사에게 이사회소집을 통보하여야 한다. 그러나 대표이사가 사고로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2.2.2에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3.1.4 이사회는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3.1.3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수 있다.

3.1.5 감사위원회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위원회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.

3.2 결의 방법

3.2.1 이사회의 결의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.

다만 상법 제397조의2 및 제398조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한다.

3.2.2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,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·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.

3.2.3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며 그 이사는 출석이사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
3.3 사후 승인

법령의 요청이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, 대표이사의 판단에 따른 필요사항으로 일정상 이사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을 경우 대표이사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 단, 다음 이사회에 경위를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3.4 부의 사항

3.4.1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.

(1)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

- 1) 주주총회의 소집
- 2) 재무제표의 승인
- 3) 영업보고서의 승인
- 4) 정관의 변경
- 5) 자본의 감소
- 6) 회사의 해산, 합병, 분할합병, 회사의 계속
- 7)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및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 또는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일부의 양수
- 8)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,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, 기타 이에 준할 계약의 체결이나 변경 또는 해약
- 9) 이사의 선임 및 해임
- 10) 주식의 액면미달발행
- 11)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면제
- 12) 주식배당 결정
- 13)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
- 14) 이사의 보수
- 15) 관련 법령에서 정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과 일정 규모 이상의 거래

16) 기타 주주총회에 부의할 의안

(2) 경영에 관한 사항

- 1)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
- 2) 공동대표의 결정
- 3) 이사회내 위원회의 설치, 운영 및 폐지
- 4) 이사회내 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
- 5) 이사회내 위원회 결의사항에 대한 재결의. 단 감사위원회 결의에 대해서는
그러하지 아니함
- 6) 지배인의 선임 및 해임
- 7) 지점·공장·사무소·사업장의 설치·이전 또는 폐지
- 8) 간합병, 소규모합병 및 분할합병의 결정
- 9) 흡수합병 또는 신설합병의 보고

(3) 재무에 관한 사항

- 1) 신주의 발행
- 2) 사채의 모집
- 3) 준비금의 자본전입
- 4)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
- 5) 타법인에 대한 대여(금전 또는 유가증권), 채무보증, 50억원 이상 출자
- 6) 주식의 이익소각
- 7)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
- 8) 대규모 재산의 차입

(4) 이사에 관한 사항

- 1) 이사와 회사간 거래의 승인
- 2) 타회사의 임원 겸임

(5) 기 타

- 1)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
- 2) 자사주의 취득, 처분 또는 신탁계약 등의 체결, 해지
- 3) 공정거래법상 대규모 내부거래
- 4) 공정거래 자율준수 관리자 선임
- 5) 10억 이상의 기부금 집행
- 6) 기타 법령, 공시규정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, 주주총회에서 위임 받은
사항 및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3.4.2 이사회에 보고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.

- (1) 이사회내 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의 처리결과
- (2) 이사가 법령 및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
감사위원회가 인정한 사항

- (3)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
- (4)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평가 결과
- (5)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현황
- (6) 기타 경영상 중요한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

3.5 이사회내 위원회

- 3.5.1 이사회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하여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이사회내에 각종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.
- 3.5.2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.
 - (1) 주주총회의 승인 사항의 제안
 - (2)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
 - (3) 위원회 설치, 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
 - (4)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
- 3.5.3 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.
다만,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,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4인이상의 사외이사로 구성하고, 내부거래위원회는 사외이사 3인 이상으로 하며 사외이사는 위원총수의 2/3이상이어야 한다.
- 3.5.4 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.
- 3.5.5 위원회의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.

3.6 폐지

3.7 위 임

- 3.7.1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할 사항중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대표이사에게 그 결정을 위임할 수 있다.
- 3.7.2 대표이사는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의 범위내에서 소관업무 담당이사에게 해당사항의 집행을 대행시킬 수 있다.

3.8 관계인의 출석

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출석

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
3.9 간 사

3.9.1 이사회에는 간사를 둔다.

3.9.2 간사는 의장을 보좌하고, 의장의 지시에 따라 이사회 사무를 담당한다.

3.10 부의 절차

의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이사 및 업무집행지시자는 부의 내용을 사전에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고, 이사회 개최 3일전까지 부의안건과 제안이유를 이사회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3.11 의사록

3.11.1 이사회 의사에 관해서는 의사록을 작성한다.

3.11.2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, 경과요령, 그 결과,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 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.

부 칙

1. 이 규정은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것 이외는 1998년 5월 1일부터 제정 시행한다.
2. 이 규정은 2000년 9월 2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3. 이 규정은 2001년 10월 1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4. 이 규정은 2006년 12월 18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5. 이 규정은 2009년 7월 1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6. 이 규정은 2009년 12월 1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7. 이 규정은 2010년 6월 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8. 이 규정은 2012년 3월 23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 다만 3.1.5, 3.2.1, 3.2.2에 정한 개정 내용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
9. 이 규정은 2017년 6월 15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